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선발
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경두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제도의 운영 간에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응시자 중 단독 직위자와 복수 집단 직위자 간 현역 근무평정 점수 반영의 유·불리 해소를 위해 절대평정점수만 반영하고, 동원·예비군 직위 경력자에게 가점을 부여함. (안 제15조, 별표 10)

나. 육군의 인사과 중 지휘관 직위 경력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함. (안 별표 1)

다. 필기시험 과목의 출제범위와 문항 수가 형평에 맞도록 문항수를 120개에서 100개로 줄이고, 문항 당 배점도 0.2~0.4점에서 0.3~0.5점으로 변경함. (안 별표 4)

라. 지휘관 직위를 이수한 임기제 진급자에게 0.3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장기복무자 우대를 위해 복무경력 점수를 3점에서 4.5점으로 변경함. (안 별표 5)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020. 3. . ~ 4. .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중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안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의 “종합판정 점수에”를 “절대평정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에”로 하고, 제7항 전단 중 “하되”를 “하며, 동원 및 예비군 관련 직위 경력자에게는 별표 10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후”로, 후단의 “점수를”을 “8.8점 범위내에서 점수를”로 한다.

별표 1, 별표 4, 별표 5, 별표 8,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직위별 응시 가능 병과(제5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병과
지역 및 직장 예비군부대 지휘관		○ 육군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 병과(인사과 중 지휘관 미이수자, 재정과 및 공보정훈과를 제외한다) 및 「군인사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병과 중 의정과 ○ 해군(해병대는 제외한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기본병과(조함과, 재정과 및 공보정훈과를 제외한다) 및 「군인사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병과 중 의무과(「병역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군사특기 중 의정만 해당한다) ○ 해병대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기본병과(재정과 및 공보정훈과를 제외한다) ○ 공군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기본 병과(재정과 및 공보정훈과를 제외한다)
예비전력 관리기구	동원지원단, 예비군훈련대, 장비·물자 관 리대의 장비관 리관 등	○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각 군의 기본병과 ○ 「군인사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수병과 중 육군 의정과와 해군 의무과(「병역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군사특기 중 의정만 해당한다)
	동원보충대대 정작과장	○ 육군: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공병과 ○ 해군: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공병과

[별표 4]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제14조제2항 관련)

필기시험 과목(40점)	범 위
예비군 법령(15점)	「예비군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병역법령(10점)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예비군 훈령(10점)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및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통합방위법령(5점)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비고

1. 법령 중 별표 및 별지 서식은 출제범위에서 제외된다.
2. 시험내용은 시험공고일 현재까지의 개정내용을 포함한다.
3. 전 과목 4지 단일 선택형으로 출제한다.
4. 전체 문항 수는 **100문항**이며, 1문항 당 배점은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0.3점**부터 **0.5점**까지로 한다.

[별표 5]

근무경력 평가기준(제15조제3항 관련)

1. 보직경력 평가기준

구분	보직경력	배점
예비군 연대장	- 연대장 직위를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대령 안보지원사령부·정보사령부 또는 제3275부대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안보지원사령부의 경우에는 군단급 이상 부대의 안보지원부대장, 정보사령부의 경우에는 단장·부대장 또는 팀장, 제3275부대의 경우에는 단장 또는 부대장으로 각각 근무한 경력에 한정한다)이 있고, 합동군사대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군사교육과정(6개월 이상의 외국 참모대학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대령	2.5점
	임기제 진급한 예비역 또는 퇴역 대령으로 연대장 직위를 이수한 사람	2.3점
	연대장 직위를 이수하지 아니한 예비역 또는 퇴역 대령(임기제 진급자를 포함한다)	2.0점
	명예 진급한 예비역 또는 퇴역 대령	1.5점
예비군 대대장/ 예비군 훈련대 장/4급	- 대대장 직위를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 안보지원사령부·정보사령부 또는 제3275부대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안보지원사령부의 경우에는 사단급 부대 안보지원부대장 또는 지역안보지원분견대장, 정보사령부의 경우에는 부대장 또는 팀장, 제3275부대의 경우에는 부대장 또는 팀장으로 각각 근무한 경력에 한정한다)이 있고, 합동군사대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	2.5점
	임기제 진급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으로 대대장 직위를 이수한 사람	2.3점
	대대장 직위를 이수하지 아니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임기제 진급자를 포함한다)	2.0점
	- 명예 진급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 - 예비역간부 진급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전역 시 소령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1.5점
예비군 중대장 /5급	- 중대장 직위를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안보지원사령부·정보사령부 또는 제3275부대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안보지원사령부의 경우에는 안보지원부대 반장, 정보사령부의 경우에는 B형 또는 C형 팀장, 제3275부대의 경우에는 팀장으로 각각 근무한 경력에 한정한다)이 있고, 육군·해군·공군 고등군사반 과정을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2.5점
	- 중대장 직위를 이수하지 아니하고 참모경력 직위를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 예비역간부 진급한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전역 시 대위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1.5점
6급 이하	대위, 준사관, 부사관	2.5점

2. 복무경력 평가기준

가. 복무경력 평가는 임관 및 전역일을 기준으로 **4.5점**을 만점으로 한다.

나. 복무경력의 계산은 현역복무연수에 따른 점수와 현역복무연수를 제외한 1년 미만 잔여 복무기간에 따른 점수를 합산한다.

1) 현역복무연수에 따른 점수는 현역복무연수에 **0.15**을 곱하여 산출한다.

2) 현역복무연수를 제외한 1년 미만 잔여 복무기간에 따른 점수는 1년 미만 잔여 복무기간을 역(曆)에 따라 계산한 개월수에 대한 점수로서 아래 표와 같다. 이 경우 복무일수 16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복무일수 16일 미만은 버린다.

잔여 복무기간에 따른 점수											
개월수	1	2	3	4	5	6	7	8	9	10	11
점수	0.01	0.03	0.04	0.05	0.07	0.08	0.09	0.10	0.12	0.13	0.14

[별표 8]

상훈 평가기준(제15조제8항 관련)

구 분	훈 장	포 장	개인표창						기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총장급	군단장급	사단장급	
배점	2.0	1.9	1.8	1.7	1.6	1.5	1.4	1.3	1.2

비고

1. 평가대상이 되는 상훈은 현역 복무기간 중에 받은 것으로서 「군인사법」 제63조에 따른 인사기록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인사기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훈의 경우에는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상훈확인기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2회 이상 상훈을 받은 경우에도 배점이 가장 높은 상훈 1회의 점수만 인정한다.
3. 외국 훈장 및 포장은 제외한다.

[별표 10]

동원예비군 관련 직위 경력자 적용 기준(제15조제7항 관련)

구 분	근무 부서	배 점
국방부	동원기획관실	• 1개 직위 경력: 0.1점 • 2개 직위 이상 경력: 0.2점
합참	작전기획부 동원소요과	
육군	• 육군본부: 동원참모부 • 지상작전사령부: 자원동원과, 예비군과 • 2작전사령부: 동원참모처 • 수도방위사령부: 동원참모처 • 군단: 동원참모처 • 동원전력사령부: 동원참모처, 동원지원단, 동원자원호송단 • 학생군사학교: 동원학부 • 사단: 동원참모처, 예비군훈련대, 예비군감사실 • 연대: 동원과 • 舊1·3군사령부: 동원참모처	
해군 (해병 포함)	• 해군본부: 동원차 • 함대사령부·인천방위사령부·진해기지사령부: 동원예비군과, 예비군관리대 • 해병대사령부: 동원예비군과 • 사단: 동원참모실, 예비군관리대 • 여단: 동원참모실 • 군수단본부: 동원과 • 교육훈련단: 동원예비군과, 동원지원단, 제16예비군관리대	
공군	• 공군본부: 동원과 • 27예비단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현역복무실적 등 평가)	제15조(현역복무실적 등 평가)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현역 근무평정은 전역일 또는 퇴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근무성적을 대상으로 하여 연도별 근무성적표상의 <u>종합판정점수에</u> 100분의 8을 곱하여 환산한 각각의 점수를 모두 합산하되, -----.	② ----- ----- ----- ----- <u>절대평정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u> 에 ----- -----, -----.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심의평가는 9점을 만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심의위원별로 <u>점수를</u> 부여하고 부여된 점수를 합산한 후 심의위원 수로 나눈 평균 점수로 한다.	⑦ ----- 하 며, <u>동원 및 예비군 관련 직위 경력자에게 별표 10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후</u> ----- ----- <u>8.8점 범위 내에서 점수를</u> ----- -----.
⑧ ~ ⑨ (생략)	⑧ ~ ⑨ (생략)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예비전력과	
연 락 처	(02) 748 - 5249